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678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12. 20

발 의 의원 : 송성열, 김길수의원

1. 수정이유

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축
하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산축하금 이외 별도의
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취지에 맞게 일부사
항을 수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6조 중 출산축하금 지원 이외에
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
규정을 삭제함.

3. 기타사항

- 수정안 대비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예산확보)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
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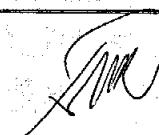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6조(예산확보 및 건강관리지원)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예산확보)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】

- 송성열 의원 외 1인 발의 -

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송성열	송성열	
김길수	김길수	